

## “비자금 오보로 회사 신뢰 크게 실추”, 「니혼(日本)텔레비전」 사장 사임

일본의 니혼(日本) 텔레비전에서는 지난 3월 16일 岐阜縣(기후현)의 비자금 문제에 관한 허위증언 보도와 관련, 久保伸太郎 사장이 상근임원회의에서 “『真相報道バンキョ』(番記者·정보를 얻기 위해 특정인을 담당하여 따라다니는 기자) 프로의 오보는 당사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다”면서 인책 사임하고 足立久男 보도국장이 파면되는 등 5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2008년 11월에 방영된 문제의 프로는 다음과 같다. 건설회사의 전 임원이 익명으로 출연하여 岐阜縣의 비자금 조성을 도왔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縣의 조사에서 부정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니혼텔레비전이 다시 취재한 결과 취재원이 증언을 번복했다. 니혼텔레비전은 縣 측에 사과하고 3월 1일의 프로에서 경위를 설명한 후 사죄했다. 9일에는 허위증언을 한 취재원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 보도와 관련, 방송윤리·프로향상기구(BPO)의 방송윤리검증위원회는 3월 13일 이 보도를 심리대상으로 결정했으며,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는 특별조사팀을 설치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기로 했다.

(신문협회보, 2009년 3월 17일자)

## Wakefield 박사, 자폐증 연구 자료가 조작되었다고 보도한 Sunday Times 상대로 PCC에 불만제기

「Sunday Times」의 Brian Deer 기자가 “자폐증에 관한 연구에서 Andrew Wakefield 박사가 자료를 조작했다”고 쓴 기사에 대해 여섯 건의 불만에 언론불만위원회(PCC)에 접수됐다.

지난 2월 「Sunday Times」는 1면에 자폐증과 장질환을 앓고 있는 12명의 어린이들에 대한 연구에서 의료 기록과 그 부모들에 관한 자료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으며, ‘Andrew Wakefield 박사, 자폐증에 관한 자료 조작’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언론불만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언론불만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한 사람은 Wakefield 박사와 연구 대상 어린이의 한 부모, 그리고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4명의 신청인이다.

Deer 기자는 기사에서 Wakefield 박사가 MMR(홍역, 볼거리, 풍진) 예방접종과 자폐증이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위해 자료를 조작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Wakefield 박사는 58페이지에 달하는 불만 청구서를 통해 “이 기사는 내가 돈을 벌려고 MMR 백신과 자폐증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꾸미고 있으며, 연구 결과를 바꿔 과학적인 사기를 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이며 독자를 호도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Wakefield 박사의 연구는 1998년 『The Lancet』에 발표되었으며, MMR과 장질환, 자폐증의 연관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MMR 백신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접종률을 낮추는 등 큰 논란을 가져왔다.

Deer 기자의 보도 이후, 다른 여러 신문들과 Channel 4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Dispatches〉도 이에 대해 보도했다. Deer 기자는 또한 의료 위원회(GMC)에 그의 취재 결과를 알렸고, 이에 따라 GMC는 심각한 직업적 위법 행위를 이유로 Wakefield 박사와 그의 동료 2명을 고발했다. 청문회는 2007년 7월 시작됐으며 아직도 진행 중이다.

Wakefield 박사는 해당 보도와 관련, 〈Dispatches〉와 「Sunday Times」를 상대로 명예 훼손 소송에 나섰지만 이후 포기했다. 그는 “내 변호사들이 GMC 사건과 명예훼손 소송을 함께 진행하지는 말라고 충고했기 때문에, 명예훼손 소송을 중단해야했다”고 말했다. GMC사건은 현재 소송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으며 8월에 판결이 날 예정이다.

Deer 기자는 Wakefield 박사의 불만 제기에 대해 “근거가 없다”며 일축했다.

(Press Gazette 2009년 4월 28일자)

## 일본 도쿄지법, “소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기사는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주간신조(週刊新潮)의 기사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North Asia대학(아키타다시·秋田市) 과 동 대학의 고이즈미(小泉) 이사장이, 발행사인 신조사(新潮社)를 상대로 함께 1억5,000만 엔의 배상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도쿄지방법원은 3월 30일 “기사는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신조사 측에 600만 엔의 손해배상금 지불을 명했다.

문제가 된 것은 2007년 11월 8일 발행된 주간신조의 기사로 고이즈미 씨가 쿠데타를 일으켜 이사장직에 취임하였으며, 자신의 뜻대로 교직원을 퇴직시키고 대학을 뺏으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취재 결과는 남에게서 들은 내용으로, 소문의 근원에 대한 취재는 일체 없었다”고 지적하고, 인사발령이 빈번하게 있었던 일, 수명의 교직원이 강등처분을 받은 일 등을 제시한 신조사 측의 증거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인사를 했다는 것을 뒷받침 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덧붙여 “기사는 대학을 탈취하려는 소문에 그치지 않고, 근거까지도 언급하여 소문이 현실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으며, 75만부를 발행하는 주간지라는 점도 고려하여 소문의 진실성 등을 증명하지 않는 한 면책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조사는 항소하기로 했다.

(신문협회보 2009년 4월 7일자)

## 유럽 인권 법원, “온라인 명예훼손 관련 시효 없는 소송 정당”

「Times」가 유럽 인권 법원에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해 시효 없이 언론사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160년 묵은 판례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유럽 인권 법원은 어제 소위 ‘Duke of Brunswick’ 원칙이 표현의 자유 권리를 명시한 제10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언론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849년 독일의 한 공작이 19년 전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신문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 성공한 이후 붙여진 이 원칙은 ‘공적 기록은 보여 질 때마다 새로운 명예훼손 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1785년부터의 막대한 온라인 기록을 가지고 있는 「Times」는 2001년 고등법원이 명예훼손 소송에서 한 러시아의 사업가에 유리한 판결을 낸 것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이 문제를 유럽 인권 법원에 가져갔다.

GL로 알려진 원고는 「Times」를 대상으로 1999년 9월과 10월 실린 두 기사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동안에 여전히 「Times」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그 기사들이 게시되었다는 이유로 1년 후 다시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Times」는 “1회 공표 원칙(The single publication rule: 대중매체가 보도한 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 차례만 명예훼손 소송이 가능하다는 원칙)”이 온라인 발행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제 내린 판결에서 유럽 인권 법원은 온라인 뉴스 기록이 ‘교육과 역사 연구를 위한 중요한 원천’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온라인 기사는 기사를 급하게 인쇄해야 할 상황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더 오래 남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에 기초해 보도할 언론사의 책임 원칙이 좀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판결이 해당 사건에 한 해 적용될 것이고 인터넷 출판 원칙으로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또 “억울한 원고가 그의 명예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가져야 하는 반면,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명예 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몇몇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제10조 언론의 자유를 부적절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News International」의 변호인 Alastair Brett는 지난달 영국에서 열린 「Press Gazette」 언론 법 컨퍼런스에서 ‘Duke of Brunswick’ 원칙에 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출판물이 처음 발행된 이후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새롭게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언제쯤 정부가 대책을 세울 것인가”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Press Gazette 2009년 3월 11일자)



## 일본 도쿄고법, “인터넷상의 비방 표현은 명예훼손”, 반론이 쉬워 무죄’ 라는 1심 파기

인터넷상의 웹사이트에 라면체인점을 비방하는 문장을 게재하여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한 회사원(37)에 대한 항소심에서 도쿄고등법원은 지난 1월 30일 1심 도쿄지방법원의 무죄판결을 파기, 구형대로 벌금 30만 엔을 언도했다.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2002년 10월부터 11월에 걸쳐 자신의 사이트에 라면체인점이 특정 컬트(cult) 종교집단과 관계가 있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1심인 도쿄지법은 2008년 2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해, 매스미디어와는 다른 새로운 명예훼손의 판단기준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이 판결에서 “개인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발신한 정보의 신뢰성은 일반적으로 낮으며 용이하게 반론이 가능하다”고 인터넷의 특성을 지적하며, ①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발신했거나 ② 인터넷 이용자라도 가능한 조사를 하지 않고 진실여부의 확인 없이 발신했을 때 비로소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인 도쿄고법 재판부는 “개인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발신하는 정보에 한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 “인터넷에 의한 표현행위는 향후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신뢰도의 향상에 의해 진정한 표현의 자유가 존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1심이 “인터넷상의 표현행위의 피해자는 용이하게 반론할 수 있다”고 한 점에 대해서도, 2심은 “인터넷상의 모든 정보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명예가 훼손되더라도 반론이 불가능할 경우가 있고, 재반론을 통해 명예훼손이 확대될 수 있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 측은 지난 2월 2일 상고했다.

(신문협회보, 2009년 2월 10일자)

## 풋볼365, Martin O'Neill 감독에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프리미어 리그 축구 클럽 애스턴 빌라의 감독 Martin O'Neill은 자신이 “이적과 관련, 거짓말을 했다는 의심이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주장한 온라인 기사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금’과 사과를 받게 됐다.

O'Neill 감독의 변호인인 Paul Hackney는 런던 고등법원 Eady 판사에 “365 Media Group이 2008년 5월 웹사이트에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그러한 주장을 했다”고 말하면서, “『Daily Mirror』가 그 이전에 보도한 명예훼손적인 기사를 피고 측이 다시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Daily Mirror』는 “리버풀의 Rafael Benitez 감독이 애스턴 빌라의 주장 Gareth Barr의 리버풀 이적과 관련 O'Neill 감독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보도한 바 있으며, 명예훼손에 대한 항의를 받고 『Daily Mirror』는 해명성 기사를 싣기도 했다.

Paul Hackney는 Football365.com을 운영하는 365 Media Group이 해당 기사가 O'Neill 감독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인정하고,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즉시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 “언론사의 잘못된 주장으로 인해 청구인은 명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당혹스러운 상태이며, 같은 주장을 했던 다른 언론사로부터 공개재판에서 공개적인 사과를 받은 지 16일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5월 9일 또 기사가 났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는 청구인의 명성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혐의에 대해 내부 조사를 통해 그러한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청구인은 여전히 피고 측 직원들의 그러한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해당 기사가 근거 없이 쓰여진 것임을 인정했고, 피고 측 변호사는 법정에서 기사를 보도한 것에 대해 무조건적인 사과와 함께, 소송비용과 손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할 것임을 제안했다.

Football365.com은 지난 2월에도 ‘Martin O'Neill은 완전 바보’라는 독자의 의견을 기사화 한 이유로 사과하고 손해배상금을 지불한 적이 있다. 그 내용은 독자의 칭찬, 비난 등의 의견을 게재하는 Mailbox란에 실렸으며, 독자 의견들은

기사화되기 전에 편집 과정을 거쳐 다듬어 지게 된다.

O'Neill 감독은 지난 4월 「Daily Record」를 상대로 명예 훼손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비롯하여 지난 8년간 「The Observer」, 「Mail on Sunday」 등을 상대로도 승소한 바 있으며, 2004년 그의 에이전시와 지분 갈등이 있다고 보도한 BBC를 상대로도 손해 배상금을 받아낸 적이 있다.

(Press Gazette 2009년 4월 28일자)

## 최초로 피해자 참가제도가 적용된 재판관련 보도, 피고에 대한 실명·익명 판단 언론사 마다 엇갈려

최초로 피해자 참가제도를 적용한 일본 도쿄지방법원의 두 공판에 대한 보도에서 각 언론사들은 피고의 이름 공개 관련, 실명과 익명(匿名)의 두 갈래로 판단이 갈렸다. 이러한 상반된 판단은 두 사건 모두 피해자 참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았으면 보도하지 않았을 사례였다는 것이 요인이다.

피고의 이름에 대해 재경 6대지 중 요미우리(讀賣), 산케이(産經), 도쿄(東京)가 실명, 아사히(朝日), 마이니치(毎日), 닛케이(日経)가 익명으로 보도했다. 교도(共同), 지지(時事) 두 통신도 익명으로 보도했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익명 보도 요청이 있어 각사들은 익명으로 보도했다.

두 공판은 남성 2명이 상해와 공갈미수의 죄로 입건된 사건과 한 남성이 자동차 운전과실치사죄로 입건된 사건이며, 통상적으로는 재판기사로 취급하지 않는 사건이었다.

요미우리신문 측은 “특별히 경미한 사건이 아니면 통상적인 재판기사에서는 실명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이번 보도는 피해자 참가제도가 없었으면 게재하지 않았을 사건이었으나 실명으로 보도하게 되었다”고 했으며 아사히신문 측은 “통상적으로 보도하지 않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익명으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신문협회보, 2009년 2월 17일자)

## 정유회사 Tycon, BBC 게시판에서 ‘범죄 혐의’ 주장한 글들에 대해 소송 제기

미국의 정유사가 BBC에 올라온 익명의 글들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전을 시작했다. 라스베이거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Tycon 에너지’는 BBC에 올라온 게시물들이 자사가 주식 거래 사기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비난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현재 Tycon 측은 BBC가 30만 파운드 이상의 막대한 손해배상금과 함께 이러한 주장이 다시 올라오지 못하도록 금지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게시물은 다른 사이트에도 올라왔으며, Google Finance와 Scam.com에서는 곧 삭제됐으나, Motley Fool 사이트에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고 청구인 측은 주장했다. 고등 법원 문서에 의하면 해당 게시물은 Tycon 측이 주식 거래 사기를 통해 투자자들을 속이려는 범죄 모의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정유 및 가스 개발 회사인 Tycon은 게시물의 잘못된 주장에 의해서 자사의 선의와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antonydavi1@hotmail.co.uk’ 라는 이메일 주소와 아이디 ‘lukoloco’ 를 사용하는 이 익명의 게시물은 BBC가 주식 거래 사기에 관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으며, Tycon의 주식을 산 사람은 연락을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Tycon은 또 게시물의 작성자가 BBC에서 일하고 있으며 그의 휴대폰 시작 번호는 방송인들만 쓸 수 있는 07711로 시작한다고 주장했다. 그 법원 문서는 청구인 측 변호인 Charles Fussell에 의해 공개됐다.

(Press Gazette 2009년 4월 9일자)

## 조건부 변호사 수임료 제도(CFA),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제한'

'승소하지 못하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제도(no-win no-fee regime)'와 '명예훼손 소송 관광(Libel Tourism: 한 사건이 여러 국가와 관련되어 있을 때 좀 더 유리한 소송 결과를 낼 수 있는 국가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위축을 가져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주장은 유럽 인권 법원에 제출된 의견서를 통해 공개됐다.

이러한 주장은 유럽인권법원에서 「Daily Mirror」의 발행사인 MGN에 의해 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락을 얻은 단체들에 의해 제기됐다.

해당 언론사는 나오미 캠벨 사건의 결정과 관련해 유럽 인권 법원에 두 가지의 소를 제기했다. 하나는 모델이 비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된 사항이고, 다른 하나는 상원에서의 청문회 이후 막대한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승소 조건부 변호사 수임료 제도(CFA: conditional fee agreement)에 관한 것이며, 두 소송은 함께 심리되고 있다.

이 사건은 'Open Society Justice Initiative', 작가 연맹인 'English PEN', 'Media Legal Defence Initiative', 그리고 시민단체인 'Global Witness', 'Human Rights Watch and Index on Censorship' 등이 참여해 진행하고 있다.

의견서는 MGN은 거대 언론사이지만 명예훼손과 관련된 막대한 비용이 공익과 관련된 탐사 보도와 정보를 전달하는 다른 소규모의 언론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또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과 관련되어 막대한 비용을 유발하는 모든 제도는 언론의 자유에 심각하고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침해를 가져 온다"며 "대부분의 극단적인 사례들은 Hoffmann이 말했듯, 피고에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게 하면서도 원고는 CFA제도로 인해 어떠한 비용도 지지 않아 '협박효과'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견서는 발행 부수가 1만1천부에 이르는 한 신문사가 어떤 독자의 편지를 실은 후 벌어진 소송에서 성공 보수만을 부담하는 원고와 달리 막대한 소송비용과 명예훼손 배상금을 부담케 돼 결국 문을 닫게 된 사례도 소개했다.

의견서는 또 옥스퍼드 대학교 사회-법률 연구소의 비교 법, 정책 프로그램에서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영국의 명예훼손 소송 비용이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140배나 많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CFA제도가 없는 곳의 피고보다 있는 곳의 피고가 상당히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CFA제도가 패소하게 된 언론사의 비용이 이로 인해 보호받는 원고의 이익과 비례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에 어긋남을 지적했다.

(Press Gazette 2009년 3월 17일자)

## 일본 법원, 주간지에 잇단 고액배상판결 - 미디어 측은 위축 우려와 함께 변화 모색

주간지에 의한 일본 씨름계(스모오·相撲)의 승부조작담합 의혹보도와 관련,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3월 26일 講談社에 대해 과거 최고배상액인 4,000만 엔을 넘는 4,290만 엔의 배상명령을 내리는 한편, 지난 2월 4일에는 新潮社에 대해 '임원의 중대한 과실로 회사가 손해를 준 경우 임원도 책임을 진다'는 구 상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명예훼손을 예방할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며 사장 개인에게도 375만 엔의 배상을 명했다.

이와 같은 이례적인 판결에 대해 미디어계에서는 위축을 우려하는 한편 주간지 보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판결에서는 출판사의 사장이 취해야 할 명예훼손 예방대책으로 ① 변호사에 의한 강의나 입증취재의 본연의 자세에 관해 교육을 받는다 ② 출판 전에 위법성이 없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한다 ③ 출판 후 제3자위원회에서 점검한다는 3가지 점을 예시했다.

(신문협회보, 2009년 4월 7일자)

##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일본 경시청 강력 단속할 방침인 듯

일본 NHK 「爆笑オンエアバトル」(폭소 on air battle) 등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 출연해온 탤런트 스마일리 기꾸찌(スマイリーキクチ) 씨의 블로그에 '살인이 뭔데 예능인 하나' 등의 글을 집단으로 투고한 18명에 대해 일본 경시청이 입건할 방침이라고 지난 2월 5일 조간신문 등이 보도했다.

기꾸찌 씨의 블로그는 2008년 1월 개설된 이후 악성 네티즌이 올린 글들로 인해 일시적으로 폐쇄될 정도였으며, 여고생 살인사건(1989년)에 관여했다는 허위내용과 함께 '죽어라, 범인인 주제에' 등의 악의적인 글들이 수십 건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 중에는 한 사람이 여러 번 집요하게 글을 올린 사례도 있었으며, 이에 기꾸찌 씨는 2008년 8월 '탤런트로서의 명예가 훼손되어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피해계를 제출, 경찰이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도쿄고등법원은 "인터넷의 개인이용자가 올린 정보에 한해 명예훼손죄의 적용을 완화한 것은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 지난 1월 30일 무죄를 언도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30만 엔의 벌금을 언도한 바 있는데, 경시청의 한 수사간부는 "도쿄고법의 이 판결이 기꾸찌 씨 사건과 관련해서도 입건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의 하나"라고 말했다.

일본 경찰청에 의하면 2004년에 3,685건이었던 피해 상담건수는 2008년에는 1만 1,516건으로 급증했다. 경시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사회의 '폭력'을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신문협회보, 2009년 3월 10일자)

